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0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가. 제안이유

-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험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함.(안 제2조제2항 신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함.(안 제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시험업무의 종류와 횟수는?	○ 계약직 채용 등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자체시험으로 연 2~3회 실시됨.(총무과장)
○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담당하는 범위는?	○ 지금까지는 시험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으며, 출제, 면접시험 등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될 수 있음.(총무과장)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 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 중 “시험관계”를 “시험 관계”로 하고, “5급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호
의결 년월일	2008. 10. 24. (제147회)

제출년월일 : 2008. 10. 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험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함.(안 제2조제2항 신설)
-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함.(안 제3조)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 중 “시험관계”를 “시험 관계”로 하고, “5급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u></p> <p>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 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천시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 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u></p> <p>제2조(시험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 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p> <p>1. 시험문제의 출제 · 심사 · 선정 · 편집 · 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p> <p>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 하는 자</p> <p>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 하는 자</p> <p>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은 행 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을 준용한다.</p> <p>제3조(여비) ----- 시험 관계-----4급 공 무원----- -----.</p> <p>제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p>